

재신체검사(확인신체검사) 통지서

통지번호: _____
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신체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신체검사	
대상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통지내역	신체검사 일시	년 월 일(시 분)
	신체검사 장소	○○병역판정검사장(○○시·도 ○○시·군·구 ○○읍·면·동)

「병역법」 제7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, 제15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

직인

준비사항	재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, 주민등록증, 병역증, 필기구, 기타 질병에 대한 증명자료 등
참고사항	※ 질병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신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. 1. 수술(입원)한 경우: 수술(입원)기록지, CT필름, X선필름 등 2. 조직, 생화학, 뇌파검사 등의 경우: 검사기록지 3. 장기간 치료한 경우: 치료기록지 4. 뇌전증, 정신병의 경우: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, 투약기록지, 치료(입원)기록지 등
유의사항	○ 「병역법」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,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합니다. ○ 「병역법」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.

재신체검사(확인신체검사) 통지서 수령증

대상자	성명	생년월일
	병적지	
	주소	
통지내역	신체검사 일시	년 월 일(시 분)
	신체검사 장소	○○병역판정검사장(○○시·도 ○○시·군·구 ○○읍·면·동)
수령인	성명	전화번호
	주소	

「병역법」 제7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, 제15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([]재신체검사 []확인신체검사)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니다.

년 월 일

수령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	1. 본인 또는 통지서의 대리수령인은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2. 이 통지서를 대리수령한 사람은 이를 본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합니다. 3.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와 이 통지서를 대리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「병역법」 제8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
------	--